

5.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 施行規則

內務部令 第688號 1996. 7. 3

주요골자

- 가.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변경고시는 관보와 해당 지역 시·군의 공보 및 게시판에 하도록 함(제3조).
- 나. 농어촌주택에 대한 품질관리사무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된 경우에는 시장·군수가 농어촌주택개량 대상자의 명단을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도록 함(제7조).
- 다.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결과를 분석·평가하는데 필요한 평가대상 항목을 정함(제9조).
- 라. 지구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고시, 개선사업 시행 승인신청, 개선사업 시행표지판 및 농어촌 빙집 현황카드등 각종 서식을 정함(별지 제1호 서식등).

개정이유

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(1995. 12. 29, 법률 제5051호 및 1996. 7. 1, 대통령령 제15105호)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

제2조(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의 자료제출) 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

사”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자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2. 소요사업비 조달계획
3. 전년도까지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(이하 “개선사업”이라 한다) 추진 실적
4. 당해 연도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(이하 “개선사업계획”이라 한다)

제3조(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등) ①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(이하 “개선지구”라 한다)의 지정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관보게재와 당해 개선지구를 관할하는 시·군의 공보게재 또는 게시판게시로써 행한다.

제4조(개선사업계획의 수립) ①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가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개선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개선사업계획은 주민소득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.

제5조(개선사업시행 승인신청) 영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사업시행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.

제6조(개선사업 시행표지판서식) 영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사업 시행 표지판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.

제7조(품질관리사무수행) ①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농어촌진흥공사에 품질관리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하는 사무의 내용과 수수료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②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사무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된 경우에 시장·군수가 농어촌주택개량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그 명단을 농어촌진흥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현황카드의 작성) 영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황카드는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.

제9조(사업결과의 분석·평가)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가 시행한 사업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매년 12월 15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내무부장관은 시·도지사가 제출한 자료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시행결과를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분석·평가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기관에 평가

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
의 대상 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당해 연도 사업추진 규모
2. 수요 지방비 예산의 확보상황
3. 시공 및 사후관리상황등 사업추진실

4.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추진방안의 창
의성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태

주택회보